貿易學會誌 제42권 제1호
2017년 2월 pp.69~97

논문접수일 2017. 01. 22
심사완료일 2017. 02. 15
게재확정일 2017. 02. 16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Legal and Inferential Studies on Importer's Risk in Investigation of Origin on FTA

김 덕 종** Duk-Jong Kim
김 희 호*** Hee-Ho Kim

| 목 차 |

Ⅰ. 서 론
Ⅱ. 수입품 원산지 조사 리스크의 분류
Ⅲ. 수입품의 원산지 조사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의 현황분석
Ⅳ. 수입물품 원산지 조사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의 사례분석
Ⅴ.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 본 연구는 2016년 6월 경주, 전국 무역학자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를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의 수정과 발전을 위해 뛰어난 심사의견을 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통관팀장, 제1저자.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교신저자.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주제어> : 원산지조사, 원산지검증,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 FTA특혜관세, 판례분석

Ⅰ. 서 론

국가 간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2국 이상 국가가 동맹을 체결하여 역내국가 간 관세철폐,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협정을 말한다. FTA협정은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역내국을 통해 다른 역내 목적지로 수출되는 무역굴절효과(Trade Refraction Effect)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n)을 두고 있다.[1] 201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52개 국가와 체결한 15개 FTA협정을 맺었으며, 모든 FTA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검증(Verification of Origin) 규정은 FTA협정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원산지 증명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검증절차이다. 원산지 검증(verification)은 협정상의 용어이지만, 원산지 조사(investigation)는 FTA 관세 특례법상의 용어이며 검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 대신 원산지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2]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협정 상대국 관세당국이 수행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한국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의 진정성 입증은 협정 상대국의 수출업자와 생산자가 수행해야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경우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즉, 수입업자는 자신이 수

1) 손병해 (2016), 국제경제통합론, p94 참조.
2) 본 연구의 범위는 FTA로 제한하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을 적용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사례는 포함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원산지 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정의한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주로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리스크와 수출자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여 수출품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다루고 있다. 특히, 이윤 외(2016)는 한·미FTA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거래상대방 리스크, 품목 리스크, 공정관리 리스크, 협력업체 리스크, 재무적 합성리스크, 운송 리스크, 원산지결정기준 리스크, 검증서류 리스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사례를 통하여 수출자의 원산지 검증 대비 체크 리스트를 개발하고 원산지 검증 리스크의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권순국(2014)은 FTA추세는 기업의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FTA 원산지규정 리스크를 시장 리스크, 충족요건 리스크, 규정 리스크, 운영 리스크, 법률 리스크로 나누어서 리스크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홍규(2014)는 원산지 검증 가운데 실체적 규정인 HS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한 불복·검증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업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원산지사전심사제도 적극 활용,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원산지검증 피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경영기법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순수 외(2012)는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한 준비 미비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검증시스템에 대한 준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한·EU 뿐 아니라 한·미, 한·중 및 기타 FTA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세관 및 관세사 등 무역실무자에게 원산지검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세관당국과 수출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윤준웅 외(2015)는 직접검증방식인 한·미 FTA와 간접검증방식인 한·EU FTA를 중심으로 직·간접 검증방식을 비교하여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원산지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서창희(2011)는 한·EFTA 자유무역협정을 적용하여 수입한 스위스 산 금괴의 원산지조사결과 추징에 따라 발생한 분쟁 사례를 연구하였다. 특히, 한·EFTA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 문구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자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협정 운영의 개선점과 대비책을 도출하였다.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한 FTA원산지정보 관리체계와 그 효율적 운영방안은 진병진(2016)과 이상진 외(2012)에 의해 연구되었다.

대부분 기존연구가 수출자의 원산지 검증 리스크,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를 구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원산지 검증 리스크에 대해 분석하고 있어서 수입자의 원산지 조사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원산지조사에서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FTA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한 수입자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손해발생의 예방뿐 아니라, 기존연구에서 거의 접근되지 않았던 손해발생의 보전방안을 새로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에서 나타난 위반사례와 FTA협정 및 국내법에서 다루고 있는 원산지 조사 규정을 분석하여 수입절차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이론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 현황과 2016년 8월 원산지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롯하여 행정법원 판결,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원산지 조사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실증분석은 수입업자의 자료와 판례가 많지 않아서 직접 우리나라 관세청의 원산지조사 자료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 FTA관세특례법 등을 근거로 수입자의 FTA 특혜관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해보았다. III장에서는 원산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추징현황을 통해, 수입자의 위험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IV장에서는 대법원, 행정법원,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를 통해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V장에서는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된다.

본 연구는 원산지 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실제 관세청 사례와 법원 판례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 또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있어서 정책적 측면에서도 연구의 의미가 크다.

Ⅱ. 수입품 원산지 조사 리스크의 분류

1. 수입품의 원산지조사

여기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FTA협정의 특혜관세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분류해 보았다. 이를 위해 <그림 1>은 수입품에 대한 FTA특혜관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한국세관의 원산지 국내조사, 원산지 국제직접조사, 협정 당사국세관에 대한 원산지조사요청, 협정 당사국세관의 원산지 국제간접조사 등 조사형태별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의 대상자는 <그림 1>과 같이 수입자, 협정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협정 상대국의 물품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수입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하는 자가 될 수 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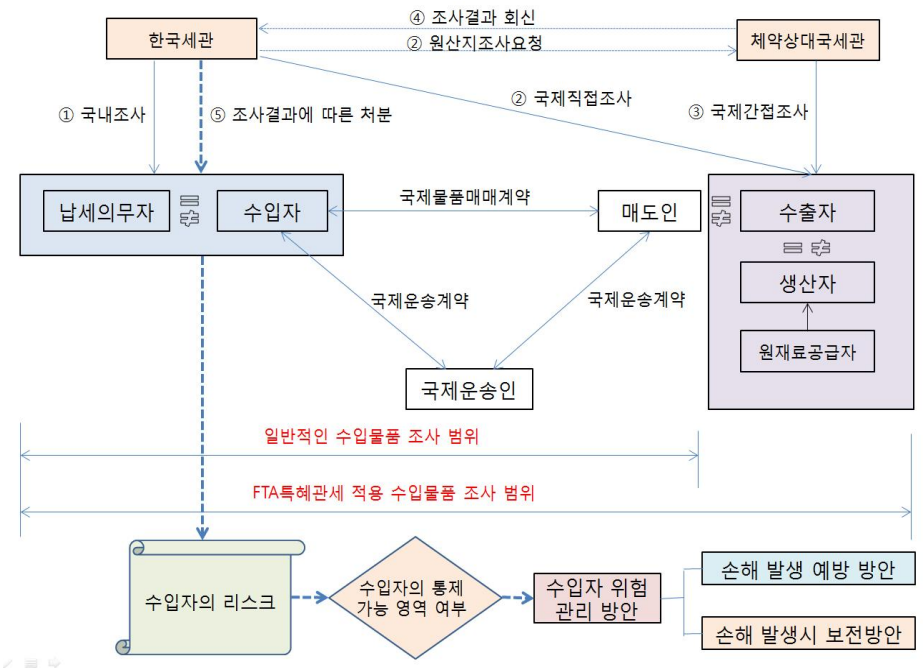

<그림 1> 수입자 리스크 관리방안

* 자료 : FTA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위해 진행되는 단계별로 연구자가 작성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한국이 체결한 FTA협정은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인 원산지결정기준과, 절차적 규정인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직접운송원칙, 거래당사자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FTA특혜관세 적용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Origin Verification) 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관세특례법") 제13조에서 원산지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산지조사는 협의적으로는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광의로는 원산지요건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세율, 운송요건 등의 모든 특혜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다.(이영달, P.460, 2016)

여기에서 수출자는 FTA협정에서 규정한 수출자[4]로서 무역에서 매도인(Seller)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한국의 매수인(Buyer)이 FTA협정 상대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제3국에 소재한 자를 통하여 구입한 경우, 제3국에 소재한 자는 한국의 매수인(Buyer)에 대한 매도인(Seller)으로서 거래당사자이다. 이때, 무역거래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귀속자는 한국의 매수인과 제3국의 매도인이다. 하지만, FTA협정에서는 FTA체결 당사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 수출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자를 수출자라고 규정하며, 그 수출자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한다. 수입품의 원산지조사 대상은 조사대상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와 수입물품이다.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원산지증명서사본[5],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등이다.[6]

한국 세관당국의 수입품 원산지조사는 수입자 등 국내에 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조사와, 협정 상대국에 거주한 수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조사로 구분하며, 국제조사는 국내조사를 한 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 여부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서 세관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서면조사와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지(방문)조사로 구분한다.(자료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국제조사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협협정 상대국(수출국)의 조사대상자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7]과 협정상대국(수출국)의 관세당국에게 조사

4) 예를 들면, 한·칠레FTA협정에서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 영역내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상품 수출에 대한 기록 유지의 의무를 지는 인을 말한다.'

5)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6) 「FTA관세특례법」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과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수입자는 해당 자료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직접조사방식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뉴질랜드, 한·캐나다 FTA에서 채택하고 있다.

를 요청하는 간접조사 방식[8]이 있다. 한편, 수입국과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공동조사[9]라 하며, 간접조사방법 가운데 수입국 세관공무원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수출국의 원산지조사 절차에 입회 또는 참석하는 것을 참관이라 한다.[10] 우리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재료 공급자나 재료 생산자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는 칠레 및 인도와의 협정에서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검증'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문제가 없으나 다른 협정은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협약 상대국과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11] (이영달, 2016, P.462)

관세청장이 협정 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국 관세당국이 협정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회신되거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협정 상대국의 수출자가 관세청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현지조사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할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다. 앞에서 언급한 수입품의 FTA특혜관세 배제는 원산지 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해당하며,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FTA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

수입자의 FTA특혜관세 적용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첫째, FTA협정 상대국에 거주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둘째, 국제운송인, 셋째, FTA협정 상대국 세관, 넷째, FTA협정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등이다. 이 가운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매도인, 수출자, 생산자가 동일인인 경우 수입자가 직접 거래하는 자이며, 국제운송인은 수입자와 매도인 간의 계약에 따라서 수입자가 접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FTA협정 상대국의 세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다. 본 연구는 수입단계별로 수입자의 FTA특혜관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무역실무

8) 간접조사방식은 한·EFTA, 한·EU, 한·터키 FTA에서 채택함. 한편,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를 모두 채택한 협정은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한·호주, 한·미, 한·베트남, 한·중, 한·콜롬비아이다.

9) 한·미 FTA에서는 섬유, 의류에 대한 국제조사는 공동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0)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에 따른 것이며, 참관제도를 둔 협정은 한·EU, 한·터키, 한·EFTA 자유무역협정이 있다.

11) 한·칠레 제5. 8조(원산지검증) 제2항 나호, 한·인도 제4.13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검증)

절차, 각 자유무역협정, FTA관세특례법 등을 근거로 도출하였으며, <표 1>에서 정리하였다. 이 표에서 '수입자의 FTA특혜관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수입단계에서 행위 주체가 위반하면 수입자가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당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을 말한다.

<표 1> 수입자의 FTA특혜관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1 국제물품매매계약 단계(행위주체 : 매수인)
▸ 수입물품에 적용할 FTA 선택 및 원산지증명서 요구
▸ 국제운송계약 책임 주체 명시
2 물품 생산 및 서류보관 단계(행위주체 : 생산자)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원재료 조달 및 물품 생산
▸ 원산지증빙서류 5년간 보관
3 C/O[12] 작성 및 서류보관 단계(행위주체 : 수출자, 수입자, C/O 발급기관)
<자율발급> (행위주체 : 수출자)
▸ FTA 규정에 맞게 C/O작성, 원산지증빙서류 5년간 보관
<자율발급> (행위주체 : 수입자)
▸ FTA 규정에 맞게 C/O작성, 원산지증빙서류 5년간 보관
<기관발급> (행위주체 : C/O 발급기관)
▸ 원산지증명서 기재 오류 및 누락 없이 정확히 발급
4 국제운송단계(행위주체 : 국제운송인)
▸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운송경로 운항
▸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또는 확보
5 서류 일치성 검사 단계(행위주체 :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 검토(양식, 발급권자, 기재사항)
▸ 운송관련서류가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6 수입신고 및 서류보관 단계(행위주체 : 수입자)
▸ FTA특혜관세 적용 신청, 수입관련서류 5년간 보관
7 수입자에 대한 한국세관의 원산지조사에 대응 단계(행위주체 : 수입자)
▸ 자료 등 제출 기한 준수(수출자와 협조관계 유지)
8 원산지 국제조사에 대응 단계
<간접조사> (행위주체 : 체약상대국 세관)
▸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실시
▸ 원산지조사결과 기한내 회신(한국세관이 요구하는 충분한 정보 포함)
<간접조사> (행위주체 : 수출자, 생산자)
▸ 수출국 세관의 간접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및 소명
<직접조사> (행위주체 : 수출자, 생산자)
▸ 한국 세관이 요구하는 자료 및 소명서 제출, 한국세관의 현지방문에 동의

* 자료 : FTA 원산지 규정의 적용과 수입단계별 원산지 조사 규정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
* Note: 굵은 체로 강조된 위험들은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나타낸다.

12) C/O : Certification of Origin(원산지증명서)이며,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방식으로 발급된다.

3.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원산지 조사 리스크

<표 1>에서 수입자가 자기 통제 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은 [1] 국제물품매매계약, [3] 원산지증명서 작성[13], [5] 서류 일치성 검사, [6] 수입신고 및 서류보관, [7] 수입자에 대한 한국세관의 원산지조사에 대응 등이다. 수입자는 물품매매계약단계에서 수입물품에 적용할 FTA를 명시하여 매도인이 하자 없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인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수입자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인수하고도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FTA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거나,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할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한국세관의 원산지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FTA특혜관세가 적용되지 못한다.

4.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원산지 조사 리스크

<표 1>에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주로 생산자, 수출자와 상대국 관세당국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며 특히, [2] 물품 생산 및 서류보관, [3]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서류보관, [8] 원산지 국제조사에 대응 등에서 발생한다. 즉, 통제 불가능한 원산지 조사 리스크는 협정 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에 의해 유발되는 리스크,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해 유발되는 리스크, 상대국의 세관당국에 의해 유발되는 리스크 등이 있다.

1) 협정 상대국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리스크

<표 1>의 [2] 물품 생산 및 서류보관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상대국의 생산자, 수출자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이다. 여기에서 수출자와 생산자는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수출자 및 생산자는 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원료를 조달하여 생산, ② 원산지증빙서류 5년간 보관, ③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자격 획득, ④ 원산지신고서를 정확히 작성, ⑤ 원산지 국제조사에 동의 및 자료제출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된 경우 수입자가 한국 세관으로부터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 당한다.

13) 한·미 FTA협정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제1항 나호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에 기초하여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김희열(2012)에서 재 인용한 세계관세기구(WCO)의 2011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177개 WCO 회원 관세 당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44개의 응답을 근거로 볼 때 발급 기관에 의한 증명이 90%,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증명이 50%, 수입자에 의한 증명이 5%이며, 응답이 100%를 초과하는 것은 일부 응답에는 복수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2) 협약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한 리스크

<표 1> 3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 기관이 발급할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기재사항을 오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이를 발견한 한국 세관은 수입자를 상대로 원산지조사 또는 FTA 체약상대국 세관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여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당할 수도 있다.

3) 협정 상대국 세관당국에 의한 리스크

<표 1> 8에서 간접조사방식에 따라 한국세관으로부터 원산지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국 세관이 ① 원산지검증을 하지 않거나 검증결과를 기한 내에 미회신[14], ②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원산지검증 회신 ③ 원산지 검증 결과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번복하면서 그 변경의 이유를 불충분하게 제공, ④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원산지가 맞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회신하는 등의 경우에는 한국세관은 수입자에게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다. ① ~ ③의 경우 수입자는 매도인이 FTA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공적 확인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채 FTA특혜관세 적용배제를 당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곤란하고, ④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수출국 세관의 회신내용에 근거하여 자신의 무책을 주장하면 수입자가 손해를 보전하기 어렵다.

III. 수입품의 원산지 조사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의 현황분석

여기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에 대한 실제 사례와 2016년 8월 대법원,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원산지조사 위반사례가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서 발생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14) 서창희 (2011), p114, 임쌍구 (2014), p50 참조. 원산지 검증결과 미회신은 원산지 간접검증제도 하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 수입품의 FTA특혜관세와 원산지 조사 현황

<표 2>은 관세청 자료를 사용하여 수입품의 협정관세 적용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총수입액 4,365억불 중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1,824억불로 41.8%의 비중이며, 2011년 23%, 2012년 32.1%, 2013년 33.2%, 2014년 37.9%로 매년 증가해왔다. 2015년 총수입액 4,365억불 중 FTA 특혜를 적용한 수입액은 772억불로 17.7%에 이르며 2011년 6.6%, 2012년 12.2%, 2013년 13.7%, 2014년 14.1%로 매년 증가해 왔다. 2015년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 1,824억불 대비 FTA특혜관세적용 수입액 772억불은 42.3%에 이르며, 2011년 28.9%, 2012년 38.2%, 2013년 41.3%, 2014년 37.3%로 매년 증가해 왔다.

<표 2> 수입물품 협정관세 적용실적

(단위 : 억불,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수입(A)	5,244	5,196	5,156	5,255	4,365
FTA국 총수입(B)	1,204	1,667	1,710	1,993	1,824
FTA특혜적용(C)	348	636	706	744	772
B/A*100	23.0	32.1	33.2	37.9	41.8
C/A*100	6.6	12.2	13.7	14.1	17.7
C/B*100	28.9	38.2	41.3	37.3	42.3

자료 : 관세연감(관세청, 2016. 8. 발행) 103쪽

<표 3>는 FTA별 수입액(2015년), C/O증명방법, C/O검증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FTA특혜관세 적용 수입실적 77,220백만불(772억불)을 FTA별로 구분하여 보면 EU의 수입액이 31,333백만불로 가장 많다. EU, EFTA, 터키의 수입액은 33,356백만불로 전체 43%에 이르며, 동 수입액에 대한 C/O 검증은 간접검증방식으로만 한다. 즉 수출국 세관이 검증하여 회신해주므로 수입자에게 통제 불가능한 검증 위험이 될 수 있다.

<표 3> FTA별 수입액(2015년), C/O증명방법, C/O검증방식

FTA	EU	아세안	미국	호주	칠레	인도	EFTA	캐나다	터키	페루
수입(백만불)	31,333	17,556	16,874	3,768	2,260	2,112	1,938	868	285	228
C/O증명방법	자율	기관	자율	혼합	자율	기관	자율	자율	자율	혼합
C/O검증방식	간접	직+간	직+간	직접	직접	직+간	간접	직접	간접	직+간

자료 : 관세연감(관세청, 2016.8.발행) 103~104쪽.

<표 4>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업체수를 보면 2012년에 277개, 2013년 476개, 2014년에 826개, 2015년에 1,038개로 3년 사이에 3.7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C/O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2012년에 1,962건, 2013년 4,681건, 2014년 11,636건, 2015년 13,765건으로 3년 사이에 7배로 증가하였다.

<표 4> 원산지 검증현황

(추징금액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수입검증	검증실시	업체수	277	476	826	1,038	2,617
		C/O 건수	1,962	4,681	11,636	13,765	32,044
	추징	수입건수	215	330	442	546	1,533
		추징금액	12,078	45,429	76,114	55,067	188,688
수출검증	업체수		178	242	298	294	1,012
	C/O건수		264	1,198	3,282	1,744	6,488

자료 : 관세연감(관세청, 2016. 8. 발행) 113쪽.

2. 수입품의 원산지 규정 위반 유형별 추징 실태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원산지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다. 수입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내용이다.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위반하는 것은 통상 수출자에게 귀책이 있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작성해 준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한 후 서류의 일치성을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출자가 FTA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품목분류번호는 수출국 관세당국과 수입국 관세당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 물품의 품목분류번호와 세율을 수입자가 책임지고 확인하여야 한다. 직접운송요건 위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귀책자가 정해진다. FTA 규정 위반의 귀책자를 위와 같은 일반적 기준으로 하여 원산지결정기준위반과 증명서류요건위반은 수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품목분류·세율적용오류는 수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2010-2014년까지 위반유형별 위반 귀책자, FTA특혜관세 추징건수 및 금액과 구성비는 <그림 2>와 같다.

원산지 규정의 위반유형별 추징건수를 최근 5년 동안 살펴보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3,60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원산지증명서류요건위반이 3,038건이다. 이

들 2개 요소는 건체 건수의 69%에 이르는데 통상 위반의 귀책자가 수출자가 된다. 즉 수입자에게 추징한 건수의 69%는 수출자의 협정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추징금액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류요건을 위반한 것이 61,24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원산지결정기준위반이 44,047백만원이다. 이들 2개 요소는 건체 금액의 70%에 이르는데 통상 위반의 귀책자가 수출자가 된다. 즉 수입자에게 추징한 금액의 70%는 수출자의 협정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2> 위반유형별 FTA 특혜관세 추징건수(2010년~2014년 합계)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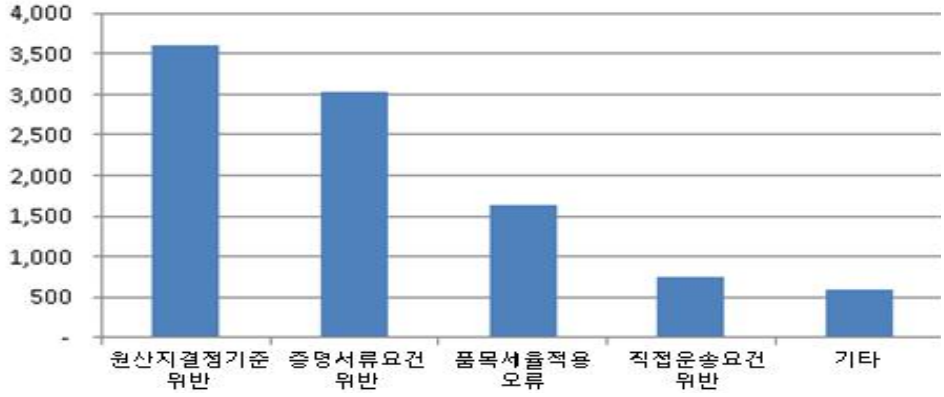

자료 : 관세연감(관세청 2015년 7월 발행)을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표 5>에서 원산지 규정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수출자와 협정 상대국의 관세당국 등 수입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서 특혜관세의 적용 위반 사례(추징금액)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례건수와 추징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과 증명서류 요건 위반 등 생산자와 수출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며, 수입자의 입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다. 특히, 원산지 규정의 위반사례는 원산지결정기준 위반과 증명서류 요건 위반으로서 <표 1> ② 물품 생산 및 서류보관, ③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서류보관, ⑧ 원산지 국제조사에 대응 등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원산지조사 리스크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이는 FTA협정 특혜관세의 적용과 원산지 증명에서 수입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위반유형별 FTA 특혜관세 추징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위반유형	위반의 귀책자	2010~2014년 합계		합계 구성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원산지결정기준위반	수출자	3,602	44,047	37.43	29.29
증명서류요건위반	수출자	3,038	61,242	31.57	40.72
품목·세율적용 오류	수입자	1,635	12,347	16.99	8.21
직접운송요건위반		748	9,833	7.77	6.54
기타		601	22,920	6.24	15.24
합계		9,624	150,389	100.00	100.00

자료는 조세심판원과 세관연감(관세청 2015년 7월 발행)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3. 조세심판원의 FTA협정 관련 판결 건수와 협정별 위반 추징 사례

<표 6> 조세 심판원의 FTA협정위반사례에서도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원산지결정기준 위반과 증명서류 요건 위반 등 <표 1> ② 물품 생산 및 서류보관, ③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서류보관, ⑧ 원산지 국제조사 등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원산지 조사 리스크에서 발생한 위반사례들이다. <표 6>의 조세심판원 결정내용을 분석하여보면 2013년부터 2016.6.2.까지 총 결정건수 852건 중 71건이 FTA와 관련한 건으로 그 비율은 8.33% 정도이다. 연도별로의 비율을 보면 2013년도 3.97%에 비해 최근 연도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FTA관련 결정건수 중 수출국세관의 위반 또는 수출국세관과 한국세관의 이견으로 인해 수입자에게 추징한 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에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13년도에 40%에 이르던 비율이 2016.6.2.에는 11.11%로 낮아졌다.

<표 6> 조세심판원 결정 건수 분석

결정연도	관세관련전체 결정건수(A)	FTA관련 결정건수(B)	비율 (B/A*100)	FTA관련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 건수(C)	비율 (C/B*100)
2013년	252	10	3.97	4	40.00
2014년	379	13	3.43	3	23.08
2015년	156	21	13.46	4	19.05
2016.6.2.	65	27	41.53	3	11.11
합계	852	71	8.33	14	19.72

자료 : 조세심판원 세목별심판결정례에서 연구자가 관세관련 결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작성

C : 수출국 세관의 위반 또는 수출국 세관과 한국세관 이견으로 인해 수입자에 추징

<표 7>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자유무역협정별 원산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추징현황을 보면, 한·EU, 한·미, 한·아세안, 한·ETFA의 순으로 추징이 발생하였다. 한·EFTA의 추징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EU의 추징은 증가하고 있다. 한·EU의 원산지증명방식은 자율증명서 발급방식이고 원산지검증방식은 간접검증방법으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여부에 대해 수출국 세관이 검증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방법의 추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협정이 발효되고 몇 년이 지난 시점부터 원산지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는 최근 체결한 한·미의 및 한·중의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위반과 추징의 증가도 예상된다.

<표 7> 협정별 추징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협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수	금액
한-EU	53	2,499	207	24,160	324	32,932	384	32,351	968	91,942
한-미	2	10	66	8,425	60	22,177	68	13,661	196	44,273
한-아세안	80	4,197	35	8,203	43	18,179	58	8,502	216	39,081
한-EFTA	21	4,881	18	4,256	8	2,531	12	176	59	11,844
한-인도	49	298	1	21	3	241	19	133	72	693
한-싱가폴	1	6	1	314	2	44	2	46	6	410
한-칠레	9	187	2	50	-	-	1	50	12	287
한-터키	-	-	-	-	2	70	2	148	4	218
합 계	215	12,078	330	45,429	442	76,114	546	55,067	1,533	188,748

자료 : 관세연감(관세청, 2016. 8. 발행) 113쪽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IV. 수입품의 원산지 조사에서 나타난 리스크의 사례분석

2016년 8월 24일 원산지검증 절차규정과 관련한 소송 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국내 최초로 선고되었으며, <표 8>에서 판례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였다. 2008년부터 불복청구가 처음 제기되었으며, 조세심판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서 판례가 나오기까지 8년이 걸린 셈이다. 2016년 대법원 판결은 원산지결정기준이라는 실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원산지 조사절차 위반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수입자 및 통관 업계의 관심이 컸었다.[15] <표 8>은 대법원 판례 외에도 고등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를 분석하여 나타내고 있다. <표 8>의 사례 1~7은 모두 협정위반의 내용이 원산지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규정 위반이 아니라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형식과 검증결과 회신기한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 위반이다. 수입자가 직접적 또는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수입자가 관세 등 추징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 특히, <표 8>의 사례 1~4는 협정의 위반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이며, 이론에서 살펴본 <표 1>의 ③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서류보관, ⑧ 원산지 국제조사에 대응 등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원산지 조사 리스크에 의해 유발되는 위반사례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소송 초기에 조세심판원은 수입자에게 귀책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최소하도록 결정하였다. (사건번호 조심2009관140 조심2008관141 조심2008관154 조심2009관98 조심2009관149 조심2009관146 조심2008관155 조심2009관153 조심2008관151). 하지만, 2016.8.18과 8.24일 대법원의 판례(사건번호 2014두8391, 2014두4290, 2014두5644, 2015두53343, 2015두50399)를 보면 당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에 대해 수입자에게 본세(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을 정당화 하였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도 없다. 피해를 당하는 수입자는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어서 도산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수입절차 및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수입자가 최선을 다했고 과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정부에서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15) SBS 2016.8.24. : 대법 "원산지 증명 제때 안된 수입금괴 관세부과 정당"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4793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표 8>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판례별 원산지 규정 위반유형

사례	협정 위반 유형	수입자/ 협정 위반자	심급	위험유형
1	수출국 세관당국이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가 맞지 않다고 회신한 후 원산지가 맞다고 번복하는 회신을 보냈으나 회신기간(10개월)을 경과하고 당초 회신을 번복한 사유 설명 불충분	㈜ㅁㅁㅅ트/ 수출국 세관	대법원2014두564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016.8.24. 선고)	<표 1> 3 원산지증명서 8 원산지 조사
2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실시기관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우체국 실수로 우편물 배송이 안 되어 회신기한을 경과함	△△리아/ 수출국 세관	대법원2015두533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016.8.24. 선고)	<표 1> 3 원산지증명서 8 원산지 조사
3	수출국 세관당국이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회신기한(6개월)을 경과하여 원산지가 맞다고 회신하였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함	㈜★★루션/ 수출국 세관	대법원2015두5039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016.8.18. 선고)	<표 1> 3 원산지증명서 8 원산지 조사
4	수출자는 5년간 원산지자료를 수출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였음에도 수출국 세관이 3년 이상 경과한 부분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지 않음	▽▽티스/ 수출국 세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777 (2014.11.25.선고), 고등법원 2015누30182 (2015.5.26.소취하)	<표 1> 3 원산지증명서 8 원산지 조사
5	수출자 사무실에 발생한 화재로 원산지증빙서류가 소실되어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 간접검증이 불가한 결과로 FTA특혜관세 적용 배제	수입자미상/ 수출자	조세심판원 2014관0170 (2014.8.21.결정)	<표 1> 3 원산지증명서 8 원산지 조사
6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데도 수입자가 그러한 형식요건을 검사하지 않고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다가 배제됨	수입자미상/ 수출자	조세심판원 2015관0169 (2015.11.18.결정)	<표 1> 3 원산지증명서 8 원산지 조사
7	수출국에서 선적된 후 제3국에서 환적 후 한국에 도착된 물품에 대해 협정규정인 '수출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FTA특혜관세 적용 배제	수입자미상/ 국제운송 부담자	조세심판원 2014관0421 (2015.6.9. 결정)	<표 1> 4 국제운송단계 7 원산지 조사
8	한미FTA를 적용하여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원산지의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FTA특혜관세 적용 배제	수입자미상/ 수입자	조세심판원 2016관0143 (2016.11.29. 결정)	<표 1> 3 원산지증명서 7 원산지 조사

자료 :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한편, 판례 사례 6~8의 경우 수입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사례 6은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데도 수입자가 그러한 형식적 요건을 검사하지 않고 협정관세적용에 사용하

였다. 만일 형식적 요건을 검사하였다면 추후 추징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사례 7은 수출국에서 선적된 후 제3국에서 환적 후 한국에 도착된 물품에 대해 협정에서 규정한 '수출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수입자가 FTA특혜관세 적용 배제를 당한 사례인데 만일 수입자가 운송인(운송주선인 포함)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서류를 인수하였을 때 서류검사를 하여 통과선하증권인지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사례 8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원산지 진정성을 입증하여 못하여 추징당한 사례이다.

요약하면, <표 8>의 사례 1~4는 협정의 위반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이며, <표 1>의 [3]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서류보관, [8] 원산지 국제조사에 대응 등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원산지 조사 리스크에 해당하는 사례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지만, 사례 6~8은 수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다.

V.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

여기에서는 판례와 사례에서 살펴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원산지 조사 리스크에 대해 위험관리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론에서 <표 1>의 [2] 물품생산서류, [3]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서류보관, [8] 원산지 국제조사에 대응 등 세부적으로 수입업자가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각각 그 위험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리스크 관리

<표 1>에서 수입자가 자기 통제 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은 [1] 국제물품매매계약, [3] 원산지증명서 작성 [5] 서류 일치성 검사, [6] 수입신고 및 서류보관, [7] 수입자에 대한 한국세관의 원산지조사에 대응 등이다. 수입자는 물품매매계약단계에서 수입물품에 적용할 FTA를 명시하여 매도인이 하자 없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인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수입자 자신이 행동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업무단계별 핵심위험요소를 아래 <표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9> 수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의 단계별 요인

번호	수입자 업무 단계	핵심요소	통제 가능한 위험유형
1	적용할 FTA 선택	- 수입물품 품목분류 - 중첩적인 FTA별 특혜관세율 비교	<표 1> 1 국제물품매매계약
2	물품매매계약 체결	- 매도인 인도 서류(C/O등) 명시 - 국제운송 책임 주체(매도인-매수인) 명시	<표 1> 1 국제물품매매계약
3	국제운송계약 (매수인 부담일 경우)	- 직접운송원칙 충족하는 운송경로 명시 -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제공 요구	<표 1> 3 원산지증명서 작성
4	서류 인수 및 검사	- C/O, 운송서류 형식요건 충족여부 검토 - 서류하자 발견 시 클레임 제기	<표 1> 5 서류 일치성 검사
5	수입신고 및 서류보관	- FTA특혜관세 적용신청(사후적용 포함) - 관련서류 5년간 보관	<표 1> 6 수입신고, 서류보관
6	원산지조사 자료제출	- 한국세관의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구자료 적기 제출	<표 1> 7 수입자에 대한 세관의 원산지조사 대응

자료 : 수입자의 수입 및 원산지조사 대응 단계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표 9>의 (1번),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에는 중첩[16]적인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한·아세안FTA가 체결되어있으면서 아세안 회원국인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도 FTA가 체결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중첩되어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FTA를 적용할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FTA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번호에 대한 FTA별 특혜관세율을 정확하게 비교해야 한다.

<표 9>의 (2번), 매수인이 수입물품에 적용할 FTA를 결정하였다면 원산지증명서 등을 매도인의 인도의무 서류로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표 9>의 (3번),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조건을 INCOTERMS 2010에 입각해서 보면, 인도 조건이 EXW, FCA, FAS, FOB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하게 된다.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인은 직접운송원칙을 충족시키는 운송경로와 입증서류를 국제운송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표 9>의 (4번), 매수인은 무역 관련서류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신고서, 선하증권 등을 인수하여 서류의 하자 여부를 검사할 때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요건 충족 여부와 운송서류의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

16) 손병해(2016), p82 참조.

부 등도 검사하여야 한다. 비엔나협약(CISG) 제39조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부적합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서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부적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통지하여야 하며, 늦어도 2년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물품불일치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 국제물품매매계약서가 CISG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서류의 부적합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를 감안할 때 서류의 하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권수, P.125, 2014)

<표 9>의 (5번),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에는 FTA특혜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할 시점에 미처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FTA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이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및 요건 등을 알아야 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거래관련서류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보관대상 서류의 종류 및 보관방법을 알고 이를 준수할 내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표 9>의 (6번), 수입자는 한국세관으로부터 원산지조사를 받으면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이외에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도 위험을 관리 할 수 있다.

수입물품 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FTA는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뉴질랜드는 3년, 한·호주는 5년, 한·인도, 한·EU, 한·터키, 한·중는 사실과 상황이 불변한 때까지로 정한다. 각 협정 및 FTA관세특례법에 따르면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생산자 포함)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 사전심사서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효력이 있다. 다만, 한·EFTA와 같이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07년에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는 사전심사가 규정되지 않았으나 2015.8.23. 협정개정 서명(2016.1.1.발효)으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수입자는 한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원산지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조력의 범위는 현지조사과정에 변호사 또는 관세사의 참관 또는 의견의 진술이다. 최근에는 체약 상대국에 소재한 수출자에 대한 직접검증 또는 간접검증 과정에도 관세사가 참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 세관이

1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 Commiss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약어 CISG)을 말하며, 일명 비엔나(국제)매매협약이다.

수입자를 서면조사하겠다고 통지하기 전에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18]에 대해서는 FTA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자율점검 안내서를 제공하여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사실과 원인 등을 설명하고 소명 및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 관리

<표 1>의 [2] 물품생산 및 서류보관, [3]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서류보관, [8] 원산지 국제조사 대응 등은 수입업자가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이며, <표 10>은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업무단계별 핵심 위험요소와 위험관리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표 10>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의 단계별 요인

번호	업무단계	행위주체	핵심요소	통제 불가능한 위험유형
1	물품생산	생산자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물품 생산	<표 1> [2] 물품생산 및 서류보관
2	원산지신고서 작성	수출자	- 원산지신고서 형식요건 충족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표 1> [3]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서류보관
2-1	원산지증명서 발급	발급기관	-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충족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표 1> [3]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서류보관
3	자료보관	생산자 /수출자	- 원산지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	<표 1> [3]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서류보관
4	국제운송	국제운송인	- 직접운송원칙 충족하는 운송경로 -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작성 제공	<표 1> [4] 국제운송단계
5	국제직접 조사 (서면, 현지)	생산자 수출자	- 원산지 조사에 동의 표명 - 적기에 자료제출 및 소명	<표 1> [8] 원산지국제조사 대응
5-1	국제간접 조사 (서면, 현지)	생산자 수출자	- 적기에 자료제출 및 소명 - 협정 위반 사실 없을 것	<표 1> [8] 원산지국제조사 대응
		수출국세관	- 원산지 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기한 내에 회신	
		한국세관	- 수출국세관의 회신내용 수용	

자료 : 수입자의 수입 및 원산지조사 대응 단계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18) ① 수출입안전우수공인업체, ② 법인심사 중인 업체, ③ 소규모성실업체, ④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등이 있다.

1) 매도인의 책임범위 명시

<표 10>의 (1번) 생산자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일, (2번)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일, (2-1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일, (3번) 생산자 및 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 일, (4번) 국제운송인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운송서류를 제공하는 일, (5번) 생산자 및 수출자가 원산지 간접조사 또는 직접조사를 받아들이고 잘 대응하는 일, (5-1번)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조사결과를 기한 내에 회신하는 일 등은 행위의 주체가 수입자가 아니라 생산자,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국제운송인, 수출국 세관 등이므로 수입자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입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국제물품매매계약내용에서 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권순국, 2014 ; 박홍규, 2014 ; 서창희, 2011)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무엇에 의해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원산지 간접조사결과 수출국 세관은 수출자가 협정의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한국 세관은 수출자가 협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입자로부터 관세 등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Ⅳ장의 사례 4)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의 최종 판단을 매도인의 계약위반 근거로 삼고 싶고, 매도인은 수출국 세관의 판단을 매도인의 계약이행의 근거로 삼고 싶을 것이다. 수입자와 매도인간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에 대한 하자여부 판단근거를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수입자 리스크의 크기가 달라진다.

2) 수출국 세관의 원산지조사 결과 미회신 및 지연회신

<표 10>의 (5-1번)에서 행위주체가 수출국 세관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첫째는, 수출국 세관이 한국세관으로부터 원산지검증을 요청받고도 검증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회신해 줌으로써 수입자가 한국 세관으로부터 추징을 당하는 사안이다.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회신해야 할 기한 내에 회신을 하지 않아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협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수입자는 한국세관으로부터 추징을 당하지만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도 없는 상태가 된다. 둘째는,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조사 결과를 회신해야 할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고 기한을 경과하여 원산지가 맞다는 회신을 하는 사안이다. 이 경우 수입자는 추징을 당하지만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도 없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가 수출국 세관의 부작위 또는 태만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행정관청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19]. 그런데 다른 국가의 관세당국이 FTA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 수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FTA에서는 두고 있지 않으며, 아직 그러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미, 한·베트남, 한·인도 FTA의 경우는 재심 및 불복청구의 인(人)적 대상을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 또는 이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한국의 수입자가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한·EFTA와 한·아세안의 경우는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한편,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뉴질랜드, 한·중 등 5개 협정에서는 한국의 수입자가 체약상대국가(수출국) 세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모든 협정에서는 재심 및 불복청구 대상은 원산지결정, 원산지사전판정 등 관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수출국 세관의 부작위 또는 협정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 수입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본 협정의 규정에 적용될지는 의문이며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도(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수입자가 FTA체약 상대국에 투자를 한 상태라면 투자자로서 FTA체약상대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ISD에 따라 소송을 하더라도 투자한 국가가 협정을 위반한 내용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동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수입자는 수출국 세관의 원산지조사결과 미회신으로 인해 한국 세관으로부터 특혜받았던 관세를 추징당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 수출자, 수출국 세관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상황에 대비 하여야 한다. 무역보험 상품이 없는 한 수입물품 재판매로 획득한 이익의 일부를 사내에 유보해 두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수출국 세관과 한국 세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표 10>의 (5-1번)에서 행위주체가 한국세관인 사안은 수출국 관세당국과 수

19)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

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의 사안이다. 수출국 관세당국은 원산지가 맞다고 회신하더라도 한국 관세당국은 원산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국 영토 내에서 관세 부과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입자가 적용했던 FTA특혜관세를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매도인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가 맞다고 회신한 것을 근거로 자신의 무책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곤란하다. 각 FTA에는 협정체결 당사국간에 협정의 해석 또는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분쟁해결조항을 두고 있다.[20] 그러나 협정 체결 당사국들 간 이견으로 인해 수입자가 입은 피해의 보전방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수입자가 한국 관세당국을 상대로 불복청구를 하여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어 피해만 입게 된다. 수입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수입가격 및 재판매가격등을 책정, 이익의 사내유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수출자와 한국 세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 세관이 FTA특혜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을 내리면 수입자에게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다. 수출자는 자신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한국 세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FTA특혜관세 적용 배제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FTA특혜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한국 세관의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에 근거하여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의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수출국 세관이 수출자의 위법성을 확인해주는 것에 둘 것이 아니라 수입국세관의 원산지조사결과에 두도록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 세관이 협정 상대국 수출자,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국제현지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 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협정 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세관은 수입자의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므로 조사대상자가 한국 세관의 현지조사를 받아들이도록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국 세관은 국제 간접조사 요청을 한 경우 회신기한이 다가오는 때에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등에 국제 간접조사 결과에 대한 회신을 독촉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

20) 한·EFTA FTA 부속서 I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제25조(분쟁해결) 참조.

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자는 세관장이 그러한 통보를 자신에게 해주도록 요청하고 만일 통보를 받으면 상대국 세관당국에 조속한 회신을 촉구하도록 매도인과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공급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매도인과 수입자가 다국적기업이거나 특수 관계자이면 보다 유기적으로 원산지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정책적 제안

본 연구는 FTA협정의 적용에서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이를 최근 5년 동안의 관세 추징사례와 법원의 관세 소송판례를 통해 그 위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FTA와 국내법에서 다루고 있는 원산지검증 규정을 분석하고 수입절차의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수입자의 자기 통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및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의 관리방안으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며 또한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할 경우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 또한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위반이 되는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수입자의 리스크가 달라진다. 이 같은 원산지 조사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현행 FTA협정 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결과를 회신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는 등의 협정위반 행위로 인해 수입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청구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FTA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

정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첫째, FTA활용 지원 범위 확대이다. 수출자와 수입자의 FTA 컨설팅 내용을 차별화 하여 수입자에 특화된 컨설팅과 교육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FTA활용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원산지규정에 대한 전문가 뿐 만 아니라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수입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수입자를 대신해서 외국 수출자 또는 외국세관을 상대로 소송, 중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정부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리스크 발생 최소화를 위한 협정을 운영해야 한다. FTA 협정문에는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검증요청일

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는 규정[21]을 두고 있는데, 이 '예외적인 경우'에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협상 당사국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의 예시를 FTA협정 당사국간 논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충분한 정보'가 어느 정도의 정보인지에 대해 당사국간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에 의한 수입자의 피해 보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 사건들은 모두 수출업자와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귀책사유가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검증결과 회신기한 6개월 이내에 미회신 (사유: 내부의사전달과정에서 우편물 배송 지연, 내부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이나, 회신기한 경과 후에 보내온 최종 회신에서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미포함된 경우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에 대해 수입자에게 조세를 추징하는 것을 정당화 하였다. 수입절차 및 원산지검증과정에서 수입자가 최선을 다했고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정부에서 수입자를 대신하여 상대 관세당국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는 구제 소송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분석한 사례 1~3의 대법원 판례 사건에서, 재심기관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협정위반을 심리하면서 수출국 관세당국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보상청구를 못하고 수출국 관세당국은 과실이 있지만 이를 대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보상청구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FTA협정은 "협정을 위반한 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내문제인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공서의 위법에 의해 입은 피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FTA협정에서는 수출국 관세당국의 위법으로 수입자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청구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없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협정 상대국에 있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거래 당사자 잘못이 아닌, 협정 상대국의 관세당국의 협정위반에 따라 수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수입자의 손해보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 경우 국내 행정적, 사법적 결정사례를 보면 수입자에게 가산세 징수는 면제해 주더라도 본세는 징수한다. 수입자가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이러한 손해보상방안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다.

21) 예를 들면, 한·EFTA 부속서 I 제24조 제7항, 한·EU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제7항, 한·터키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25조 제7항 등이 있다.

참고문헌

권순국(2014)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pp.165-192.

김희열·곽근재(2012), “미국의 원산지검증 사례분석과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4호, pp.499-522.

박홍규(2014),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pp.47-72.

서창희(2011), “자유무역협정상의 원산지를 둘러싼 분쟁”, 「국제법무연구」, 제15권 제1호, pp.103-122.

손병해(2016), 「국제경제통합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윤준웅·이춘수(2015), “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2호, pp.201-223.

이상진·김덕연(2012), “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0권 제4호, pp.81-97.

이영달(2016), 「한중FTA전략적 활용을 위한 FTA 협정 및 법령 해설」, 서울: 세인북스.

이윤·김제선·정홍주(2016) “한·미FTA의 원산지검증리스크 식별 및 체크리스트 개발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pp.19-50.

임상구(2014), 「국내기업의 FTA 원산지검증 대비 실태와 제도상의 개선방안 연구」, 2013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준수·조준영(2012), “한·EU FTA 원산지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pp.45-68.

진병진(2016), “FTA 원산지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2호, pp.107-127.

최권수(2014), 「A PLUS 무역실무 1」, 서울: ㈜로그인네트윅.

관세청 관세연감(2015) 2015.7월 발행.

관세연감(2016) 2016.8월 발행.

대법원판례, 2015두5039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015두533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014두5644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2014두839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014두429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77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심판원, 조심2008관0141, 조심2008관0151, 조심2008관0154, 조심2008관0155, 조심2009관0098, 조심2009관0140, 조심2009관0146, 조심2009관0149, 조심2009관0153, 조심2013관0059, 조심2013관0060, 조심2013관0069, 조심2013관0179, 조심2014관0170, 조심2014관0421, 조심2014관0426, 조심2015관0169, 조심2015관0195, 조심2016관0131.

Legal and Inferential Studies on Importer's Risk in Investigation of Origin on FTA

Duk-Jong Kim
Hee-Ho Kim

Abstract

This study purpose to examine the importer's risks that may arise from origin investigation by Customs authorities. We have drawn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and divided the stages from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the importer to the undergoing origin investigation. In addition, we demonstrate empirically that the risks that arise in areas where importers are difficult to control exist.

As a management method of the uncontrollable risk from the importer, we have provided the methods that the seller stipulated the seller's responsibility in the trade contract, prepared for situations in which no one was responsible, and formulated a friendly and cooperative supply chain.

Even if the seller's liability is clarified in the contract for sale, the risk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 of the imported goods is not completely eliminated. This is because, under the current agreement and system, there is no way for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FTA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importers due to breach of agreement such as not returning the result of the origin verification. Importers are subject to customs duties, but there may actually be situations in which no one is responsible for them.

<Key Words> : Investigation of Origin, Un-controllable Risk, FTA, Judical Cases